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 -057호

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76호(2013.03.14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6호(2014.01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5-34호(2015.05.2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호(2017.01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53호(2017.06.08.)로 사업시행변경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20호(2018.02.08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28호(2018.03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-103호(2018.11.01.)로 사업시행변경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43호(2019.05.09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9-94호(2019.07.25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0-118호(2020.07.0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0-122호(2020.07.09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21-184호(2021.10.07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75호(2022.12.0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 변경) 고시된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또한,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3년 5월 11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기 정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12 일대, 31,796.60m²
- 변 경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12 일대, 31,432.30m²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김미환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14길 5-3, 4층(수색동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5년 5월 21일(區고시 제2015-34호, 2015. 5.21.)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변경없음

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	기정	변경	변경사유
시행 면적 (m ²)	합계	31,796.60	31,432.3	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75호 (‘22.12. 8.)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사항 반영
	정비기반시설	6,434.60	6,063.1	
	도로	5,360.60	5,340.20	
	녹지	758.00	폐지	
	공원	270.00	720.90	
	학교	46.00	폐지	
	대지면적	25,362.00	25,369.20	
건축 시설	건축면적 (m ²)	5,672.54	5,697.94	○ 주동출입구(101~104동) 특화 디자인적용
	건축연면적 (m ²)	100,628.66	100,728.04	○ 사우나기계실(주민공동시설-1) 면적 증가
	지하면적 (m ²)	37,289.11	37,388.49	○ 사우나기계실(주민공동시설-1) 면적 증가
	건폐율 (%)	22.37	22.46	○ 주동출입구(101~104동) 특화 디자인적용
	용적률 (%)	249.74	249.67	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75호 (‘22.12. 8.)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사항 반영
기타	설계도서 (지하주차장, 부대시설)	-	○ (수색초등학교 측) - 용벽 추가 계획 및 계단 계획 - 조정선형 변경 ○ (수색8구역 측) - 부대토목 용벽 변경	○ 서울시, 교육청 협의 완료 후 계획 반영 ○ 촉진계획(경미한) 변경 반영
		○ (주민공동시설-1) - 사우나 기계실 면적 72.40m ²	○ (주민공동시설-1) - 사우나 기계실 면적 171.78m ²	○ 실공사시 추가 용량 필요 ○ 설비성능 보완

아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변경없음

자.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차. 변경의 사유 및 내용 : 관계도서 참조,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308-1794)
및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(☎ 351-7484)에 비치. 끝.